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안내문>

2014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기본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아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2014년에 타사무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전 근무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출기한까지 미제출하실 경우 2015년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 배우자, 직계비속(20세 이하인자), 직계존속(60세 이상인자), 형제, 자매(20세 이상 60세 이상)
동거입양자(20세 이하), 위탁아동(18세 미만)

1.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1954.12.31. 이전 출생자)
만 20세 이하 (1994.01.01. 이후 출생자)
2. 소득기준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실 때 부양가족이 **연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특별공제 중 의료비나 교육비는 공제가능) 부양가족 별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별첨한 '근로자 확인사항에 꼭 체크**를 해주셔야 소득공제를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으며, 부당공제를 받으시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 유무를 반드시 등본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미 체크시 소득이 100만이하라고 간주하고 진행합니다.)

※ 부양가족 중 취업 및 근무, 사업, 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가족이 있으신 경우(물론 연령 및 소득이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여야 함)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일시퇴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1. 근로소득자 제출서류

★ [별첨] 연말정산 근로자 확인사항 ← 필수 작성 및 제출 서류 (p.6~7)

- ① **주민등록등본**(취업, 사업,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상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위의 ①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③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④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의한 서류 제출(부양가족 제출분 포함)
⇒ **별첨자료 참조하여 PDF파일로 제출해 주세요**
- 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되지 않는 서류들은 직접 제출
⇒ 안경구입비, 취학전아동의 교육비(미술학원, 태권도장, 피아노학원) 등
- ⑥ 주택자금에 대해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인 경우 세대주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25.7평 이하) 등 주택자금 소득공제 요건을 별첨된 '근로자 확인사항'을 통해 자세히 알려주길 바랍니다.

(1)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관련 사항

기본공제자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

- ①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인당 100만원 공제)**
만 70세(1944.12.31 이전 출생) 이상인 직계존속
- ② **장애인 추가공제 (1인당 200만원 공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③ **부녀자 추가공제 (50만원 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 혹은 세대주인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단, 배우자의 소득유무는 고려하지 않아도 됨
- ④ **한부모소득공제 (100만원 공제)**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⑤ **기타사항**
추가공제는 중복공제가 가능. 단, 부녀자공제와 한부모소득공제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한부모소득공제만 적용함.

(2) 물적공제 중 연금보험료 관련 사항

- ① 국민연금보험료(직장가입자분 외 지역가입자 분도 공제가 가능)
- ②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3) 특별소득공제

1) 보험료 공제

- ①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별도 제출할 자료 없음

2) 주택자금 공제 ⇒ 연말정산서비스에서 서류 제출 가능

① 주택자금 공제시 공통적용 사항

- ㉠ 세대의 개념 :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
-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이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함
- ㉢ 주택마련저축 : 2014.12.31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요망. 주택청약종합저축인 경우 금융기관에 제출한 무주택확인서도 확인해야 함. 무주택확인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주택자금 공제 불가하므로 2014.12.31까지 반드시 금융기관에 제출되어야 함.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제출 요망,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공제가능
 -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 ⇒ 건축물대장 등 확인 요망
 - ㉢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경우 : 입주일(혹은 전입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으로서 차입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이어야만 함. 단,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
 - ㉣ 금융기관 외에서 대출 받는 경우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입주일(혹은 전입일)부터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인면서 이자(이자율 2.9% 이상)를 지급하는 경우. 단,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

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

- ④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대출기간이 15년 이상(2003.12.31. 이전 차입분은 10년 이상)이고 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해야 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만 함.

(4) 물적공제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관련사항

- 1) 개인연금저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서류 제출
- 2) 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출자투자액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직접 제출
-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서류 제출
 - ① 소득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 지출분도 공제가능(연령요건은 무시)
 - ② 형제·자매 지출분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해도 공제 불가능
 - ③ 의료비와 취학전아동을 위한 사설학원 교육비 지출액, 중고등학교 자녀에 대한 교복구입비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공제 가능
- 4)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직접 제출

(5) 세액공제 관련사항

- 1) 연금계좌(퇴직연금과 연금저축임)세액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서류 제출
- 2) 보험료 세액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서류 제출 가능
 - ① 보장성 보험만 공제가능
 - ②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으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 본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공제함
- 3) 의료비 세액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부 서류 제출 가능

- 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 의료비 지출분은 연령요건과 소득요건 상관없이 공제가능, 단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본인이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 지출액은 공제불가능
- ②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와 장애인보장구구입비용 등에 대한 서류는 연말정산서비스에서 출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접 영수증 제출 바람

4) 교육비 세액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부 서류 제출 가능

- 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분은 소득요건만 충족되면 공제가능
- ②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 지출분은 공제 불가능
- ③ 사설학원교육비는 취학전아동에 한해서만 교육비 공제가능
- ④ 장애인특수교육비는 나이요건, 소득요건 상관없이 공제가능
- ⑤ 대학원은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능
- ⑥ 장학금 및 회사지원 학자금은 공제 불가능
- ⑦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형제자매(배우자쪽 포함)도 소득요건 충족시 공제가능
- ⑧ 국외유학비인 경우 납입영수증 증의 서류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

5) 기부금 세액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부 제출

- ① 본인과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한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 공제가능
- ②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가능
- ③ 기부금 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 제출 요망

6) 월세액 세액공제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과 ㉡ 항목
- ②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③ 주민등록지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동일할 것
- ④ 월세계약서와 월세 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 제출

◆ 참고사항 ◆

국세청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대부분의 소득공제자료를 발급 받으실수 있으며, 추가 공제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www.yesone.go.kr 로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발급가능, 부양가족의 소득 공제자료도 같이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

기본공제 가능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등록을 하여 부양가족의 서류까지 같이 출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퇴직연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② 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③ 의료기관 지급 의료비와 의약품 구입비
- ④ 유치원, 학교 및 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
- 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 ⑥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 ⑦ 연금저축 불입액
- ⑧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등 확인서

[별첨] 연말정산 근로자 확인사항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꼭 제출해주세요)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다음의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경우 예, 아니오에 란에 간단하게 ○로 기입해 주시길 바라고 확인란에 확인자를 기입하고 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입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자안내문을 확인한 후에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확 인 사 항	예	아니오																																
1	2014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신가요?																																		
2	2014년 12월 31일 현재 법적배우자가 있으신가요?																																		
3	기본공제를 받고자 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있으신가요?																																		
4	<p>3번 항목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증명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알려주시길 바라고 다음의 항목에 대한 추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부양가족 현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관계</th> <th rowspan="2">이름</th> <th rowspan="2">주민등록번호</th> <th colspan="2">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여부</th> </tr> <tr> <th>예</th> <th>아니오</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r> </tbody> </table>	관계	이름	주민등록번호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여부		예	아니오			-					-					-					-					-				
관계	이름				주민등록번호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여부																													
		예	아니오																																
		-																																	
		-																																	
		-																																	
		-																																	
		-																																	
5	부양가족이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습니까?																																		
6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했습니까?																																		
7	부양가족 중 기초수급권자가 있는 경우 기초수급권확인서를 제출했습니까?																																		
8	부양가족 중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위탁아동확인서를 제출했습니까?																																		
1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하신 서류 외 기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이 있습니까?																																		
11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과 관련된 소득공제자료가 있습니까?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자료가 출력가능하니 자료가 있는 경우 제출바랍니다.)																																		
12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공제는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대상입니다. 신입사원인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상세양식으로 자료를 출력하여 근로자로 재직한 이후에 지출한 금액만 제출했습니까?																																		
1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입니까? ② 금융기관 등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했습니까?																																		

	확 인 사 항	예	아니오
14	<p>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세대주가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p> <p>① 차입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입니까? ②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했습니까? ③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입주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이며 차입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됐습니까? ④ 금융기관 외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입주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이며 이자(연 이자율 2.9% 이상)를 지급하고 있습니까?</p>		
15	<p>월세에 대해서 세대주가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p> <p>① 임차인이 근로자 본인이고 무주택세대주입니까? ②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했습니까? ③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입니까? ④ 주민등록지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동일합니까?</p>		
16	<p>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세대주가 받고자 하는 경우</p> <p>① 주택의 명義와 차입금의 명義가 근로자 본인 것입니까? ②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입니까? ③ 근로자본인의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④ 2013년 이전에 차입한 경우 취득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입니까?(2014년 이후에 차입한 경우 국민주택여부 상관없음) ⑤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 기준시가(매입가액이 아니라 국가에서 공시하는 가액을 말함)가 4억원 이하입니까? 단, 2013년 이전 차입한 경우의 주택 취득시 기준시가는 3억원 이하입니까? ⑥ 2014년 12월 31일 현재 세대 전원의 주택이 1채입니까?</p>		
17	<p>2014년에 다른 회사에 근무를 한 경우가 있나요? (※ 다른 회사에 근무를 했다면 해당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p>		

◆ 별첨자료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서류제출하기

-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2) 로그인하여 나온 화면에서 귀속연도를 2014년으로 선택하신 다음 각 항목의 지출금액의 조회(조회)를 클릭하여 지출금액을 확인합니다. 단, 부양가족지출분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단의 소득공제제료제공동의를 통해서 부양가족에 대한 동의를 공인인증서 등으로 하고 난 후 부양가족에 대한 서류 또한 조회하여 출력하시면 됩니다.
- (3) 조회한 전체항목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PDF 파일로, 조회한 전체항목 인쇄하기를 클릭하시면 종이로 서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 (Income Deduction Search/Print) pag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tabs for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Allow access to My Document) and '납세자코너' (Taxpayer). Below the navigation, there are links for '제공동의/동의취소 신청', '미성년 자녀자료 조회신청', '제공동의/조회신청 현황', and 'FAX민원처리 현황'.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a table of expenses for the year 2011. A search bar on the right contains the text '조회'. A pop-up window titled '조회한 항목 한번에 다운로드하기' (Download all searched items at once) is open, showing a list of items with checkboxes for selection. The items include: 보험료 (Insurance), 의료비 (Medical Expenses), 교육비 (Education Expenses), 신용카드 (Credit Card), 직불카드 (Debit Card), 현금영수증 (Cash Receipt), 장기주택저축기부금 (Long-term Housing Savings), 주택마련저축 (Home Purchasing Savings), 장기주식형저축 (Long-term Stock Invested Savings), 기부금 (Donation), and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Membership Fee For Small Size Enterprise). The pop-up window also includes a '다운로드' (Download) button and a '취소' (Cancel) button.

- ① 귀속연도 2014년으로 선택
- ②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동의(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등)
- ③ 모든 조회항목을 클릭하여 각 항목의 지출금액 확인(부양가족 있는 경우 포함)
- ④ 조회한 전체항목 다운로드를 클릭
- ⑤ 조회한 전체항목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나온화면에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저장함

(4) 다만, 연도중에 새롭게 입사를 하신 분이나 중도입사하신 분들은 위에서 말씀드리는 PDF 파일대신 개별항목을 조회하신 다음 상세약식으로 출력(종이 혹은 PDF파일)하셔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들면 보험료 항목을 조회하신 다음 개별항목 다운로드 혹은 인쇄하기를 클릭하신 다음 상세약식으로 출력하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이에 대한 설명은 34 쪽의 저자주를 참고하길 바람)

이렇게 조회를 하는 이유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의 금액은 근로자로 재직 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다른 직장에서 이직하신 근로자분께서는 다른 직장에서 퇴사시 중도퇴사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셨을 것이므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종전근무지에서 수령하셔서 연말정산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